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84호, 2023. 10. 31. 제정·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양자종합계획 및 양자시행계획, 기술지도, 상용화 전담기관 등과 관련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3조, 제8조, 안 제11조, 안 제12~14조 등)

나. 양자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조직,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7조)

다. 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 및 대응, 보안위협요소 관련 검토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라. 양자팝,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20조)

마.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성과점검 및 지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21~23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자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 양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양자종합계획은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한다.

③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자종합계획의 목적과 성과지표, 목표 달성 기한 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계획의 변경
2. 다른 법령·계획 등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종합계획 확정 후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첨단기술 및 산업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수립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부처별 시행계획 또는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립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양자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 확정 후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국가안보, 첨단기술 및 산업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양자전략위원회의 조직·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국방부장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7. 국가정보원장
 8.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양자전략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양자전략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양자전략위원회는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전략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전략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양자전략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⑨ 국무총리는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실무위원회의 조직·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자전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들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대학교 부교수 이상 또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지원기술 관련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양자산업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법 제10조의 양자과학기술의 영향 및 보안위협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5. 법률, 인력양성, 특허, 표준화, 산업화, 소프트웨어, 정보보호, 정보통신, 인문, 그 밖의 분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련 전문성을 인정할 사람
-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양자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자전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이란 다음 각 호의 안건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안건 중 전문적, 기술적인 내용 등 일부
 2. 제2조제1항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양자종합계획의 보고
 3. 법 제24조제5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보고
-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무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⑧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외에 관계 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제1항제1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전문위원회의 조직·구성·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 연구소, 대학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전문위원회를 조직하여 서면·구술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수당) 양자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활용하여 할 수 있

다.

② 조사한 자료는 법 제7조제4항의 실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 관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 전문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정보체계 구축 관련 전문성을 지닌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 및 대응)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향분석은 서면조사,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보호시스템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 등에 대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인증, 부인방지, 책임추적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과 민간에 대한 다양한 보안위협요소를 검토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법 제10조제2항의 공공과 민간에 대한 보안위협요소를 검토할 때 보안위협요소에 대한 대응방안의 효과성을 포함하여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④ 정부는 법 제10조제2항의 공공과 민간에 대한 보안위협요소 검토 및 법 제10조제3항의 대응방안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응 기술의 개발 및 검증, 시범사업 및 실증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의 결과를 양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지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기술지도를 2년마다 작성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념 및 범위
2. 기술 수요 및 동향 조사 분석
3. 기술 발전 전망(시장 확산 시기 포함)
4. 대상 기술 선정
5. 양자기술발전 단계에 따른 기술개발 내용
6. 기술 확보 전략(역량 및 제약요인 포함)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지도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12조(상용화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참여비율 기준으로 정규직 5명 이상의 양자산업 관련 전담조직이 있을 것
2. 양자산업 관련 상용화 경험이 있거나 상용화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법 제10조의 양자과학기술의 영향 및 보안위협 대응을 포함한 양자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4. 양자과학기술의 상용화 관련 공정한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

② 정부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경우 관보에 고시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상용화 전담기관의 성과평가 게시) 정부는 법 제14조제3항의 성과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상용화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정부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정취소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표준화 추진)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양자산업 분야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 관련 기술개발, 표준화 지원 등 표준 관련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확산

2. 표준 제정·개정·폐지를 위한 관련 정보·자료의 수집, 분석
3. 표준 조사·보급·확산과 국제교류를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4. 표준 보급·확산을 위한 표준의 적합 확인, 적용 또는 활용 지원
5. 표준 제정·개정·폐지, 조사·보급·확산을 위한 산업계·학계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 증진
6. 표준 관련 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표준에 관한 홍보·교육·훈련·전시 등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일 것
2. 표준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실적이 있을 것
4. 표준화와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컨설팅·교육 등의 실적이 있을 것

③ 정부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경우 관보에 고시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취소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창업 및 기업육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양자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정부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경우 관보에 고시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취소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양자팍의 구축·운영 지원)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전문 운영인력 및 시설 활용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자팍 중 박사급 또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인력 확보 수준
2. 양자팍 시설의 정량적 활용률
3. 양자팍 시설을 활용한 연구성과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고 서면 평가, 전문가 의견수렴의 방법 등을 종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양자팍 운영을 위한 박사급 또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의 현황 및 정규직 여부, 해당 인력의 근속연수
2.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외부 활용 건수
3. 양자팍 시설을 활용한 연구성과
4. 양자팍 운영의 투명성
5. 양자팍 사용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
6.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로 성과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 ① 법 제18조제5항에서 “양자연구센터의 지정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도의 전담조직이 있을 것
2. 20인 이상의 박사급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논문 영향력지수, 특허 등 충분한 연구 성과가 있을 것
5. 인접 기술 분야와의 연계 및 융합이 용이할 것

② 정부는 양자연구센터를 지정하기 전에 제1항의 지정요건을 고려한 선정 수립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의 성과평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로 성과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정부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연구센터를 지정할 경우 관보에 고시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취소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1항각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익년도를 포함한 5년간 사업의 종류와 예산, 사업의 정량적 성과와 정성적 성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항의 내용을 법 제3조의 양자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양자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 등의 지원)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학 및 대학원(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대학 및 대학원을 말한다.

1.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한 별도의 학부·학과·전공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할 것
2. 제1호의 학부·학과·전공이 양자과학기술 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갖출 것
3. 전문교육기관을 구성하는 대학 및 대학원의 연합체가 15인 이상의 교수 또는 박사급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4. 제3호의 전담인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논문 영향력지수, 특허 등 유의미한 연구 성과가 있을 것

5. 인접 학문 분야와 공동으로 연구 및 인력양성이 가능하여 양자과학 기술과 인접 학문 분야의 연계 및 융합이 용이할 것

제21조(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은 관보에 고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성과점검 결과를 양자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의 계획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이하 이 조에서 “협의기간”이라 한다)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④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목적과 성과지표, 목표 달성 기한 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계획의 변경

2. 다른 법령·계획 등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⑤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성과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제22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①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계획을 세워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양자클러스터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양자클러스터를 지정받기 원하는 시·도의 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견을 시·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형태로 작성하여 문서 및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3항의 시·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을 접수하여 해당 시·도를 양자클러스터로 지정하는 것이 다음 각호의 양자클러스터 지정요건에 타당한지 검토하고, 타당한 경우 시·도지사의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해당 양자클러스터의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및 역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양자클러스터 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논문, 특허, 표준, 보유인력, 인력양성·전환·정착을 위한 노

력, 보유시설, 보유시설의 실적 및 공동활용 노력, 상용화, 국제협력 등 관련 현황과 역량

3. 법 제24조제2항제3호의 양자클러스터 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실적과 발전방향
 4. 법 제24조제2항제3호의 양자클러스터 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간 상호 연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실적과 발전방향
 5. 양자클러스터 운영방안
 6. 양자클러스터간 협력방안
 7. 양자클러스터의 목표 성과와 성과관리 방안
 8.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법 제 25조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및 지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이하 이 조에서 “협약기간”이라 한다)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 ⑥ 양자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해 양자전략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으로써 확정된다.
- ⑦ 양자클러스터는 제6항에 의해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 확정됨으로써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의한 양자전략위원회 의결을 받아 양자클러스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⑧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확정 및 양자클러스터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

의 내용을 포함하여 해당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양자클러스터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2.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양자클러스터의 지형도면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성과점검) 정부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성과점검 및 결과에 대한 내용과 조치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 등의 위임 ·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에 대하여 위임할 경우 14일 이상의 관보 고시를 거쳐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에 대하여 위탁할 경우 14일 이상의 관보 고시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평가 등의 적용례) 제13조, 제17조, 제18조에 의한 성과평가는

이 영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평가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과학기술산업과	
연 락 처	(044) 202 - 6871